



# 미국 장애인법(ADA) 이의신청 절차

개정 2021/11

## 미주리주 교통부 대외민권과

미주리주 교통부(Missouri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oDOT)는 1990년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서 규정한 대로 모든 사람이 능력에 근거하여 서비스 참여에서 배제되거나 혜택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DA 관련 이의신청은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부서가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동등한 이용 기회나 참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혜택을 거부함으로써 ADA의 제2편(Title II) 및/또는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s of 1973) 제504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당사자 집단은 부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자

MoDOT, MoDOT 하위 기관, MoDOT 자문 위원 또는 MoDOT 계약자가 장애를 근거로 당사자 또는 특정 부류의 대상을 차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DA 이의신청 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ADA 조정관에게 제출합니다.

서면 이의신청은 부서의 ADA 이의신청 양식을 사용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양식은 MoDOT 웹사이트 [www.modot.org](http://www.modot.org)에서 프로그램 탭 (programs) → 대외민권(External Civil Rights) → ADA 아래에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소로 부서에 서면 요청하여 양식 사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Missouri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External Civil Rights  
P.O. Box 270  
Jefferson City, MO 65102  
Attn: ADA Coordinator

이용 가능한 형식: 이 문서는 요청 시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이 이의신청 절차의 종이 사본과 이용 가능한 형식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573)526-2978 로 MoDOT 의 대외민권과(External Civil Rights Division)에 전화하십시오. 청각 장애인은 (800)735-2966 으로 미주리 중계 서비스(Relay Service)에 연락해 통화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미국 장애인법(ADA) 이의신청 절차

개정 2020/12

구두 이의신청은 부서에 (573)526-2978로 전화해 ADA 조정관을 요청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전달하기 위해 통역사 또는 대체 형식과 같은 합리적 편의사항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양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시면 지원을 제공해 드립니다. 언어 또는 난청 지원은 (800) 735-2966 또는 711(수신자 부담 - TTY)로 Missouri Relay에 전화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 또는 구두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차별 조치가 있는 후 **180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음 주소로 이의신청을 제출해 주십시오.

Missouri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External Civil Rights  
P.O. Box 270  
Jefferson City, MO 65102  
Attn: ADA Coordinator

또는 다음으로 이메일 발송:

[ADA@modot.mo.gov](mailto:ADA@modot.mo.gov)

## 2. ADA 조정관과 만나 귀하의 이의신청을 논의합니다.

ADA 조정관은 부서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10 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와 만나거나 이의신청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화 회의를 주선합니다.

## 3. ADA 조정관은 회의와 ADA 이의신청 양식의 정보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의신청 사실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일치 여부를 위해 작성한 보고서를 이의신청자에게 전달합니다. 문서가 이의신청 사항을 정확하게 기술한다는 데 이의신청자가 동의하면 문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합니다. ADA 조정관도 이 양식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합니다. 이의신청자가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의신청자가 만족할 때까지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자가 보고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보고서에 서명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표기됩니다.

## 4.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합니다

보고서에 서명한 뒤 **60 일** 이내에 ADA 조정관이 이의신청 사항을 조사합니다. 조사 후 ADA 조정관은 이의신청자에게 연락해 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이의신청 사항이 해결되는 방식과 이의신청이 해결되는 기간에 대해 설명합니다. ADA 조정관은 서명 및 날짜가 기재된 서면 결정 형식의 조사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제공합니다. ADA 조정관의 결정은 부서의 최종 결정이 될 것이며, 차별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사유' 또는 '사유 없음'의 결과와 MoDOT에서 이의신청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취하게 될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 미국 장애인법(ADA) 이의신청 절차

개정 2020/12

## 5. 이의신청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자가 최초 이의신청에 대한 부서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자는 다음의 관련 연방 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 연방 교통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FTA), 연방 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연방 자동차 운송 회사 안전 관리국(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FMCSA).

## 6. 기타 제출 선택안

위에 설명된 대로 MoDOT의 ADA 이의신청 제기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 또는 당사자 집단이 미주리주 인권위원회(Missouri Commission on Human Rights), 미주리주 법무장관실(Missouri Attorney General's Office), FHWA, FTA, FMCSA 또는 FAA 민권국(Office, Civil Rights Division),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또는 미국 법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에 공식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자는 다른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MoDOT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 7. 기록 유지

부서의 ADA 조정관은 최종 회신일로부터 20년 동안 ADA 이의신청 사항 및 관련 문서를 보관합니다.

### 이의신청 처리 일정

이의신청 제기 기한	180일 이내
ADA 조정관이 이의신청자와 만나야 하는 기한	근무일 10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 조사 기한	60일 이내
최종 결정 기한	30일 이내
이의신청 사항의 기록 및 세부 요약 보관 유지 기한	20년